

11 가축분뇨관련영업

- 개요 : 가축분뇨관련 영업을 하고자 할 때 시설·장비·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춘 자가 허가를 득하거나 변경허가, 변경 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
- 법적근거 :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
-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

| 구분 | 법정 사항 | 사전심사청구 |
|------|---|---|
| 처리기간 | 7일~40일 | 7일~30일 |
| 구비서류 | (1)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 신청서 (2) 사업계획서 (3) 시설 및 장비 명세서 (4)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(5)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(6)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| (1)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 신청서 (2) 사업계획서 (3) 시설 및 장비 명세서 (4)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(5)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(6)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|